

수입, 지출 집계한 간편장부 꼭 작성해야

IP사업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개인들이 의욕에 앞서 창업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어느 사업에도 세무, 회계 지식이 필요하듯이 IP창업자에게도 최소한의 세무 상식이 필요하다.

사업 운영을 위한 세무·회계 지식 중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간편장부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사업자는 1년간 사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금액(이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과 경비를 집계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1999년부터는 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 간편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 간편장부의 의미

● 간편장부 대상자의 판정 기준

- ◆ 간편장부 대상자인지의 여부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1999년도 장부 기장 의무는 사업자의 1998년도 1년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 ◆ 1999년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그 수입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된다.
 - ◆ 1998년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1998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1999년도 장부 기장 의무는 사업자의 1998년도 1년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일정 규모 이상(간편장부 대상 기준 수입금액 이상)이 되면 1999년도부터 복식기장의 무자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 2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거나 2종류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종된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재 의무를 판단한다.

- 간편장부 양식(국세청 훈령 제 1999-3 호로 고시)

◆ 간편장부 대상자가 사업내용으로 보아 간편장부만으로 재고관리 등을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 별도의 보조부를 두거나 추가적인 장부를 사용하여도 된다.

-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차이

- ◆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정식 장부를 기록한 것으로 인정되어 기장

구 분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도매업, 소매업, 광업, 임업, 어업, 수렵업, 축산업, 산림소득, 부동산매매업	3억원 미만자	3억원 이상자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운수통신업(부가통신업 등), 창고업, 전기ガ스 및 수도사업	1.5억원 미만자	1.5억원 이상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종(데이터베이스업 등)	7,500만원 미만자	7,500만원 이상자

주) IP사업자가 사업서비스업의 데이터베이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면 직전년도 매출액이 7,5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와 운수통신업의 부가통신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면 직전년도 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임

주)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장세액 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한하여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한도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복식기장 의무자는 받을 수 없다.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 무기장가산세

연간 매출액 4,800만원미만의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다.

● 간편장부하는 사람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소득세 신고

소득세 신고는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세법상 인정되는 수입 및 비용과 인정되지 않

니하는 수입 및 비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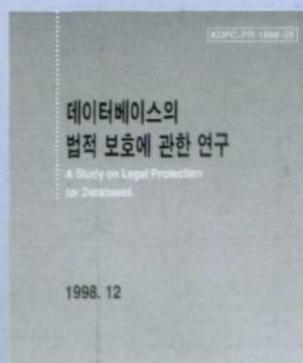
그리고 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의 기록사항을 집계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면 되고, 간편장부 대상자로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하거나 재무재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간편장부에 기재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그대로 집계하여 신고하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면 된다. ☺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이 연구보고서는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각국에서 마련했거나 준비중인 데이터베이스의 추가 보호법의 내용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국내법상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 보호법 마련의

필요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연구되고 논의되어야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마련돼야 하는지 등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외국의 입법 동향을 분석해 국내 데이터베이스 침해 현황 및 저작권법과 기타 법률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마지막으로 이상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과제 및 대책을 제시했다.

〈149면/ 비매품/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편〉